

# 프랑스 동성 결혼 및 동성 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에 관한 논의

## I. 들어가면서

지난 2월 12일 화요일 프랑스 하원의회는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이라는 별칭의 동성 결혼 및 동성 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sup>1)</sup>을 통과시켰다. 동성애자에게도 민법상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 동성 결혼은 프랑스와 올란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 II. 법안 채택 과정

법무부장관인 크리스티안느 토비라(Christiane Taubira) 장관과 가족부 장관 대행인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의 공조로 작성된 이 법안이 처음 국무회의에 안건으

로 제출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이었다. 이후 동성 결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부터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공공연한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반대집회와 찬성집회가 번갈아 이어졌다. 2013년 1월 13일에 이루어진 반대 집회는 경찰 측에 따르면 34만 명, 주최 측에 따르면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sup> 이에 대응해 1월 27일에 이루어진 찬성 집회에는 12만 5천명(경찰 측)에서 40만 명(주최 측)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몰렸다.<sup>3)</sup>

1월 29일 시작된 하원에서의 심의는 집권당인 사회당(Parti social)이 중심이 된 좌파와 대중운동연합(UMP)이 중심이 된 우파 사이의 격렬한 토론으로 10일간 주말도 없이 계속되었다. 특히 반대파의 중심인 대중운동연합은 5,166개의 수정안을 등록하며 어떻게든 법안 채택을 어렵게 하고자 했다. 법안 작성 과

- 1) 동성 커플의 결혼 합법화 법안(Projet de loi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personnes de même sexe) 원문 참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26587592&type=contenu&id=2>
- 2)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1/23/manif-pour-tous-apres-le-succes-la-realite-des-chiffres\\_1821120\\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1/23/manif-pour-tous-apres-le-succes-la-realite-des-chiffres_1821120_3224.html)
- 3)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3/01/27/01016-20130127DIMFIG00128-la-mobilisation-reussie-des-pro-mariage-gay.php>

정에서 포함되었다면 더욱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을 인공수정과 대리모 관련 사항이 법안에서 제외되었고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12일 오후, 329표의 찬성, 229표의 반대, 10표의 기권으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법안이 가결되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평등, 평등!(égalité! égalité!)”을 외치며 자축하였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장관은 가결 후 “동성 결혼의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일보이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니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음을 강조했다.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완고한 염려에서 나온다.”는 철학자 레비나스<sup>4)</sup>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토의 기간 동안 한 일”이라며 마지막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완전히 채택된 것은 아니다. 4월 2일부터 상원에서 두 번째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좌파가 우세한 만큼 상원에서의 가결도 예상되는 일이나 이를 대비한 반대파의 준비가 만만치 않다. 3월 24일에는 반대파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sup>5)</sup>에 690,000명의 서명을 모아 검토를 청원하거나,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둘 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에 동성 결혼에 대한 심의는 권한에서 벗어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sup>6)</sup>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경우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의장인 장 폴 델부아(Jean-Paul Delevoye)는 22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sup>7)</sup>

동성 결혼은 왜 이토록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것이다. 보수 세력에게 있어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인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논쟁 외에 실제로 이 법안이 가져오는 민법상의 변화는 무엇일까.

### III. 부부로서의 동성 커플

먼저 이 법안을 통해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부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법안

- 4)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했던 프랑스 철학자인 엠마뉴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를 인용함으로써 토비라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안이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사회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 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 의회이다.
- 6) 프랑스 헌법재판소 2011년 1월 28일 결정 Décision n°2010-92 QPC.
- 7) CESE : "La pétition contre le mariage pour tous est irrecevable", Le Monde, 22.02.2013,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2/22/cese-la-petition-contre-le-mariage-pour-tous-est-irrecevable\\_1836889\\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2/22/cese-la-petition-contre-le-mariage-pour-tous-est-irrecevable_1836889_3224.html).

제1조는 기존에 있던 혼인과 관련된 조항들의 수정과 민법전에 새로운 조항인 제143조의 삽입을 다루고 있다. 새롭게 삽입될 제143조는 «혼인은 성별이 다르거나 같은 두 사람에 의해 맺어진다.»고 명시한다.

기존 민법전은 혼인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75조와 제144조<sup>8)</sup>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추정할 뿐이다. 1804년 처음 민법전을 작성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법전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결혼에 대한 정의는 판례가 다시 정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점점 동성애자들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1982년 동성애의 비범죄화<sup>10)</sup>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사회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11월 15일 시민연대 협약(PACS)에 대한 법령 제99-944호가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도 제도적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 법령이 채택되기까지는 이번과 비슷하게 전국적 규모의 논쟁과 대립이 있었으나 채택된 이후 PACS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부정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PACS 제도는 결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PACS 법안의 투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엘리자베스 귀구(Elizabeth Guigou)는 PACS 제도의 설립 이유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혼인이란 가족관계로서, 부모와 자(子)의 관계에 있어 동성 커플과 이성커플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를 구성하는 기본 관계는 바로 친자관계이다”<sup>11)</sup> 혼인관계를 가족의 시작점으로 보고 친자관계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이상,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 연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성향을 가진 반대파들의 주요한 반대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조금씩 혼인관계와 친자관계의 두 개념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될 수 있었던

8) 제75조 마지막 항 : 호적부 관리책임자는 각 혼인 당사자로부터 차례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받는다. 제144조 :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혼인 할 수 없다.

9) 1989년 7월 11일 대법원 사회부 판결에 따르면 결혼처럼 동거생활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커플을 전제로 한다. 1997년 12월13일 민사부판결에 따르면 임대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성커플간의 내연관계와 동성커플간의 내연관계를 동등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0) 1982년 8월 4일 법령 제82-683호는 같은 성의 미성년자와 저지르는 정숙치 못한 행동이나 반인륜적인 행동은 처벌한다는 형법전 제331조 2항을 폐지했다.

11) E. Guigou, AN, séance du 3 nov. 1998 consacrée à la proposition de loi sur le PACS : Journal Officiel 3 Novembre 1998, p.7945.

것이다.

이번 법안이 부부로서의 동성 커플에게 가져다 줄 변화를 이해하려면 혼인제도와 비교하여 PACS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면 된다.

현재 PACS 제도(민법전 제515-1조~제515-7-1조) 하에서 두 사람의 결합은 사서증서 혹은 공증증서의 계약을 통해 맺어지는 사적 관계에 불과하다. 후에 이 계약을 1심 법원에 등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확정일자를 갖추기 위함일 뿐이다. 그러나 혼인은 18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호적부관리책임자에 의한 공적인 의식이다. 혼인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허용이 되나 PACS는 성년에게만 허용이 된다. 또한 혼인은 위임에 의한 혼인, 사후 혼인도 허용이 된다. 그러나 PACS는 두 파트너가 모두 입회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혼인은 호적의 구성과 발급 권리를 주지만 PACS는 그렇지 않다.

해지의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PACS는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반면 혼인관계는,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2년의 별거기간과 이혼절차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 PACS는 한 쪽 파트너가 결혼할 경우 바로 종결된다. 이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종료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서 각 배우자의 권리 보호와 자식이 있을 경우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PACS 해지의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밖에도 PACS는 혼인과 달리 상대 파트너의 성을 가져다 쓸 수 없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권도 없다. PACS는 국적적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반면, 외국 국적자가 프랑스 국적자와 혼인을 한 경우 혼인생활 기간과 프랑스 거주 등의 몇 가지 조건 하에 신고절차만 걸치면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PACS 체결만으로는 체류증 발급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며 프랑스인과 또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국적인과의 공동생활 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PACS는 또한 배우자 사망 시 전환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PACS는 무엇보다도 결혼과 달리 친권과 친권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PACS는 어디까지나 커플로서의 삶만 제도적으로 규정할 뿐이다.

이제 부부로서의 동성 커플은 기존에 혼인관계로 맺어진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토록 큰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동성 커플이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통해 부부로 인정된다는데 있지 않다. 이 점은 오히려 과반수의 프랑스 인들이 찬성하는 부분이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동성 커플에게 « 부모 »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다.

#### IV. 부모로서의 동성 커플

이번 법안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

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동성부부에게 친자관계 성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혼인 중의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중의 동성부부도 공동입양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방식 또한 완전입양(adooption plénière, 민법전 제343조~제359조)과 단순입양(adooption simple, 민법전 제360조~제370-2조)<sup>12)</sup>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 관련 역학조사서<sup>13)</sup>는 동성부모와 관련하여 “동성부모로 구성된 가족에서 자란 아이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의 엄청난 차이는 없다고 고려되는 것이 현재 연구 동향”이라는 연구결과<sup>14)</sup>를 인용했다. 또한 이 법안은 아이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는 양쪽 부모 모두와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입양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PACS 제도 하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친자관계를 맺을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Institut National Etudes Démographiques)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25,000에서

40,000 명의 어린이가 동성 커플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동성애 가족 관련 협회들에 따르면, 이 수치는 축소 집계된 것으로 실제로는 30만 명의 동성애 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 가족의 구성 예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 쪽 파트너가 과거에 이성 결혼을 통해 자식을 얻은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는 부자관계와 모자관계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재혼 가족같은 재구성된 가족의 상황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동성 커플이 아이를 기르지만 친자 관계는 한 쪽 파트너하고만 성립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파트너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혼인 중이 아닐 경우에는 출산한 모(母)하고만 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우는 동성 커플 중 한 쪽 파트너가 입양을 한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쪽 배우자만 입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인권재판소와 최고행정재판소 모두 입양하려는 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입양 청구 신청의 기각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법안은 이처럼 사실상 존재하는 다양한 동성애 가족을 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 보호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입양과 친자관계와 관련하여는 여러 가지 논

12) 완전입양이란 우리나라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에서 명시하는 친양자 입양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단순입양은 우리나라 민법 제772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양자 입양과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13)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projets/pl0344-ci.asp>.

14) Olivier Vécho, Homoparentalité et développement de l'enfant : bilan de trente ans de publications, La psychiatrie de l'enfant, 2005/1(vol.48), PUF.

의가 가능하다. 가족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여 위의 역학조사에서 인용된 연구와 의견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의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sup>15)</sup> 물론 동성 커플도 아이를 원하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나 부모가 다른 성별을 가지는 것은 아이의 정신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아이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의 역할은 아이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에 배치하고 세대의 연속성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친자관계라는 것이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진실에만 근거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민법전도 한국의 민법 제844조와 마찬가지로 부의 친생추정을 한다(민법전 제312조). 혼인 중 처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남편이 친생자 검사 없이 자동으로 부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명한 프랑스 법학자인 장 카르보니에(Jean Carbonnier)가 “혼인 관계의 핵심은 부부가 아닌 부의 친생자 추정이다”라고 한 것을 봐도 혼인과 친자관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다. 프랑스 법은 이러한 부의 친생자 추정을 통해 한쪽에는 부(父) 다른 한 쪽에는 모(母)와 연결되는 사실 임직한 친자관계(une filiation vraisemblable)를 자식에게 보장한다. 이렇게 성립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비록 생물학적인 친부모는 아니지만 위의 부의 친생추정에서 사용된

논리를 사용하여 사실임직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성부모 밑에서 자란 양자의 경우 비록 생물학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때로는 생물학적인 관계의 부모자식간 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동성 부모의 경우, 처음부터 위의 사실임직한 친자관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성 부모의 경우 어디까지나 아이의 교육적, 감정적인 면에서의 부모만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성인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한다. 또한 동성 커플에게 입양된 아이의 경우 그것이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라면 부가 없는 셈이고 이는 남자 동성 커플이라면 모를 빼앗긴 것이어서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는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용되는 입양의 예는 보통 한 쪽 배우자가 실제 부모인 경우 다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한쪽 배우자와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가족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경우 사실상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을 동성부부와 그 자식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하여도 위의 반대 의견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

15) Aude Mirkovic, les dommages pour tous du mariage de quelques-un, droit de la famille n°1, janvier 2013, dossier 5.

족법개정안에 포함될 인공 수정과 대리모 문제 때문이다. 입양이라는 것은 본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를 다시 가족에 편입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아이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공 수정과 대리모가 금지되는 프랑스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임신하고 후일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아이가 훗날 자라날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어른의 욕심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할 문제일지 모른다. 이번 법안에서는 법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제외되었지만 후에 올해 상반기 안에 제출될 가족법 개정안에 포함될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혼과 입양의 허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변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허용함에 따라 양자(養子)의 성과 관련한 변화가 있다. 법안의 제2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양자의 성과 관련해 민법전의 제357조의 수정을 명시하고 있다. 양자는 입양하는 자의 성을 따른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공동입양일 경우, 기존에는 자는 모의 성이나 부의 성 혹은 둘 모두의 성을 선택해 따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공동신고

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어떤 성을 사용할지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만약 두 배우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둘의 성을 알파벳순으로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법안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3장(제4조~제21조)은 동성 결혼이 다른 법조문에 끼치는 영향, 결과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의 조항들은 주로 친자관계와 연관된 기존 조항들에서 성별 구분을 없애는데 할애되었다. “남편과 아내(mari et femme)”는 복수일 경우 “부부”, 단수일 경우 “배우자(époux)”로 대체되고 “부(père)와 모(mère)”는 “부모(parents)”로 대체되며 부 또는 모 한쪽만 가리키고 싶을 때는 “(혈연상이든 법률상이든) 친자관계로 이어진 사람(personne unie par un lien de parenté)”으로 대체된다. 이 같은 대체는 특정 조항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커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성 결혼을 반대파의 가장 큰 반대 이유 중 하나였고, 특히 시위표어에 가장 많이 사용된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UMP소속인 의원 에르베 마리통(Hervé Mariton)은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가져올 결과인 민법전에서의 부와 모의 용어의 소멸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다. 법안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서<sup>16)</sup>에

16)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jsessionid=FDE001EDBAA02909B662316CFE796A17.tp\\_djo08v\\_2?idDocument=JORFDOLE000026587592&type=expose](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jsessionid=FDE001EDBAA02909B662316CFE796A17.tp_djo08v_2?idDocument=JORFDOLE000026587592&type=expose)

는 필요할 경우에만 대체를 할 것이며 특히 법적 효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과 관련 조항에는 이 같은 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장관은 11월 23일 르몽드誌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부와 모의 용어는 민법전의 가능한 모든 곳에서 유지된다. 우리는 이성간 혼인관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호적과 자식의 출생·사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서류인 이성 커플의 가족대장에는 여전히 부와 모로 남을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동성 커플들이 ‘부모’가 될 수 있게 할 뿐이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가족에 따라 사용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이성 커플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부와 모’라는 표현을, 동성 커플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성별을 없앤 중립적인 의미의 ‘부모’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법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부모”, “친족관계”라는 표현이 모든 조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항 해석상 엄청난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데 있다. 좁은 의미로는 부와 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상속법과 관련해서 이는 또한 친족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용어만 변경한, 잘

못 작성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sup>17)</sup>

## VI. 유럽에서의 동성 결혼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혼이 아닌 프랑스의 PACS와 같은 시민적 결합의 형태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 모두 시민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커플에게도 혼인을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많은 권리와 의무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6개 국가였다. 2001년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 벨기에(2003년), 스페인(2005년), 노르웨이와 스웨덴(2009년), 그리고 2010년에 합법화한 포르투갈이 그 국가들이다. 헌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2013년 2월 5일에는 영국 하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상원에서 이번 4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프랑스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8번째 유럽 국가가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성 결혼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성 커플의 이익을 점점 더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17) Annick Batteur et les autres, A propos du projet demariage pour tous : le maintien dans le Code civil du double sens du mot « parent » est unimpératif juridique !, Droit de la famille n°1, janvier 2013, dossier 3.



19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시민적 결합 계약으로 커플로 지내고 있던 동성애자들에게 입양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판결<sup>18)</sup>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한 것은 한 쪽 파트너가 불가리아에서 단독으로 입양을 한 레즈비언 커플과, 비슷한 상황이나 루마니아에서 한 쪽 파트너가 단독으로 입양을 한 게이 커플이었다. 기존 시민적 결합 계약 하에 지내는 커플의 경우 한 쪽 파트너가 직접 낳아 키우는 아이의 경우 다른 파트너가 입양을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파트너도 입양을 한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두 번째 파트너의 입양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번 청원으로 재심을 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이러한 방식의 입양이 혼인 관계의 부부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대우로 보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모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같은 성별인지 다른 성별인지에 따라 이러한 보호 적용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일이라며 환영했다.

같은 날, 유럽인권재판소도 오스트리아의 레즈비언 커플의 공동 입양을 거부한 오스트리아 법이 유럽 인권협약에 어긋난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 10,000유로의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sup>19)</sup>했다. 만약 입양의 허용 여부가 혼인

을 하거나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여부가 이성 커플이거나 동성 커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서로 다른 처우를 가족의 유지 또는 아이의 복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Ⅶ. 맺음말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대선을 앞둔 2012년 5월 이미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1월 취임연설에서도 동성애자의 평등을 언급하였다.

왜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12년 11월 17일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인류학자인 모리스 고들리에(Maurice Godelier)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네 개의 독립적인 진화의 결과이다. 동성애가 또 다른 성일 뿐 보통의 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점진적인 인정, 아동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 출현, 생식,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 그리고 민주주의 사

18) 판결 원문 :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pressemitteilungen/bvg13-009>

19) Affaire X et autres c. Autriche (requête no 19010/07), <http://hudoc.echr.coe.int/sites/fra/pages/search.aspx?i=001-116998>.



회에서 소수자가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이 그것이다”<sup>20)</sup>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의심할 여지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소수자로서 여전히 사회적 질책과 눈총,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은 한 발 앞서나가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들의 인

권을 법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 리 원**

(파리1대학, 한국노동연구원 해외통신원)

### 참고문헌

- Annick Batteur et les autres, A propos du projet de mariage pour tous : le maintien dans le Code civil du double sens du mot « parent » est un impératif juridique !, Droit de la famille n°1, janvier 2013, dossier 3.
- Aude Mirkovic, les dommages pour tous du mariage de quelques-un, droit de la famille n°1, janvier 2013, dossier 5.
- CESE : "La pétition contre le mariage pour tous est irrecevable", Le Monde, 22.02.2013,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2/22/cese-la-petition-contre-le-mariage-pour-tous-est-irrecevable\\_1836889\\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2/22/cese-la-petition-contre-le-mariage-pour-tous-est-irrecevable_1836889_3224.html).
- E. Guigou, AN, séance du 3 nov. 1998 consacrée à la proposition de loi sur le PACS : Journal Officiel 3 Novembre 1998, p.7945.
- Affaire X et autres c.Autriche (requête no 19010/07), <http://hudoc.echr.coe.int/sites/fra/pages/search.aspx?i=001-116998>.
- Maurice Godelier, "L'humanité n'a cessé d'inventer de nouvelles formes de mariage et de descendance", Le Monde, 17.11.2012.
- Olivier Vécho, Homoparentalité et développement de l'enfant : bilan de trente ans de publications, La psychiatrie de l'enfant, 2005/1(vol.48), PUF.
-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1/23/manif-pour-tous-apres-le-succes-la-realite-des-chiffres\\_1821120\\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01/23/manif-pour-tous-apres-le-succes-la-realite-des-chiffres_1821120_3224.html)
-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3/01/27/01016-20130127DIMFIG00128-la-mobilisation-reussie-des-pro-mariage-gay.php>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jsessionid=FDE001EDBAA02909B662316CFE796A17.tpdjo08v\\_2?idDocument=JORFDOLE000026587592&type=expose](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jsessionid=FDE001EDBAA02909B662316CFE796A17.tpdjo08v_2?idDocument=JORFDOLE000026587592&type=expose)

20) Maurice Godelier, "L'humanité n'a cessé d'inventer de nouvelles formes de mariage et de descendance", Le Monde, 17.11.2012.